

#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	2533
------------	------

남궁역 의원 (국민의힘, 동대문구3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서울로 7017의 식물 성장에 따른 화분 균열, 식재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바, 식물 및 화분에 관리, 화분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로 7017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로 7017의 관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(안 제2조제3호)하였으며, 식물 및 화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(안 제5조의2)하였습니다. 또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화분 훼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(안 제12조제6호)하였습니다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감사합니다.